

저작권법의 적용과 대학도서관의 대응 전략에 관한 고찰*

A Research on Applying Copyright Laws and Response Strategies for Academic Libraries

곽 동 철 (Dong-Chul Kwack)**

목 차

- | | |
|--------------------------------|-----------------------------|
| 1. 서 론 | 4. 대학도서관계의 저작권 법규 수용과 대응 전략 |
| 2. 도서관 관련 저작권 법규의 제정과 개정 추이 | 5. 결 론 |
| 3. 저작권 법규 개정에 대한 대학도서관계의 대처 내용 |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저작권법 개정 이후부터 최근까지 저작권관련 법규의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계가 저작권법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정보서비스를 위축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저작권 관련법규의 제·개정과 시행으로 인한 도서관정보 서비스 제공 문제를 살펴본다. 둘째, 저작권 관련법규 가운데 도서관 관련 조항의 제정과 개정 추이를 고찰한다. 셋째, 저작권 관련법규 적용에 대한 도서관계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대응 내용을 조사 분석한다. 넷째, 이를 바탕으로 대학도서관계의 저작권 관련법규 수용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sustainable development plans in which academic libraries comply with copyright laws without withdrawing their information services by focusing on the changes of the relevant regulations since 2000 when copyright laws were revised. The study deals with the followings in detail. First, the issues with library information services is examined, owing to the enactment, revision, and execution of copyright laws. Second, the histories of enacting and amending copyright laws related to libraries are considered. Third, various opinions and response measures as to applying the copyright laws to libraries are analyzed. Forth, based on the previous analysis, the study suggests response strategies that academic libraries accept for copyright laws and keep improving library information services.

키워드: 대학도서관, 도서관정책, 저작권법, 도서관정보서비스, 지적재산권
Academic Library, Library Policy, Library Management, Copyright Law,
Library Information Servi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본 연구는 2012학년도에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kwackdc@cju.ac.kr)
논문접수일자: 2013년 10월 17일 최초심사일자: 2013년 11월 12일 게재확정일자: 2013년 11월 19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4): 235-254, 2013.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4.235]

1. 서론

최근 들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는 저작권법의 제정과 시행은 도서관계, 특히 대학도서관계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도서관보상금'이란 화두가 저작권 문제를 도서관계의 관심사로 부각시킨 주요한 계기라고 하겠다. 도서관은 이용자인 국민들의 평생 학습권 확대, 문화향유권 신장, 정보접근권 향상,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도서관은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정보자원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이면 누구에게나 가능한 무료로 도서관의 정보기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이다. 저작권 제도 역시 궁극적으로 학술 진흥과 문화 발전 및 경제 발전이라는 목적을 지향하는 만큼 도서관의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 및 역할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부터 저작권 관련 법규가 제정과 개정을 거듭하면서 도서관에서의 정보서비스를 차츰 더 제한하여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저작권법의 강화와 도서관정보서비스 제공은 단기적으로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장기적으로까지 바람직하지는 않는 복잡한 문제라고 하겠다. 이 두 문제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문화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그리 다르지 않는 만큼 갑과 을의 관계나 상하관계가 아닌 동반자 관계 속에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저작권법을 제·개정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

서 몇 차례 단체명을 바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공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인 대학도서관이나 대학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제기 중에 있다(김기태 2012, 23-28; 한국복제전송권협회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저작권법 개정 이후부터 최근까지 저작권관련 법규의 변화 추이를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계가 저작권법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정보서비스를 위축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필자가 2007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를 맡아 직·간접적으로 수행한 업무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저작권 관련법규의 제·개정과 시행으로 인한 도서관정보서비스 제공 문제를 살펴본다. 둘째, 저작권 관련법규 가운데 도서관 관련 조항의 제정과 개정 추이를 고찰한다. 셋째, 저작권 관련법규 적용에 대한 도서관계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대응 내용을 조사 분석한다. 넷째, 이를 바탕으로 대학도서관계의 저작권 관련법규 수용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도서관 관련 저작권 법규의 제정과 개정 추이

우리 도서관계 주변의 변화 가운데 정보기술의 도입이나 발전만큼 혼란스러운 것이 저작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 제도는 종이의 발명, 인쇄술의 발전 및 컴퓨터 기술의 발

전에 의하여 창작자에게 창작 촉진과 더불어 이용자의 이용 활성화란 조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즉, 저작권 관련 법규는 인쇄매체에서 전자매체에 이르기까지 기술적 진보에 맞춰 변화를 거듭해 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컴퓨터의 보급과 정보기술의 발전은 도서관계에도 저작권 문제를 도외시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 저작권 관련 법규의 체계 및 제·개정 이유 등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살펴보면, 그 체계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제·개정하거나 시행 중인 저작권법규 관련 상·하위 관계는 2013년 8월 현재 우리나라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저작권 관련 법규 체계에서 살펴볼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3).

우리나라 현행 법규 가운데 저작권 관련법규 처럼 제·개정 횟수가 많은 경우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관련부서가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해 당사자가 불만이 크다면 오히려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이를테면, 저작권법과 관련된 제정 및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소관 중앙행정부처가 선진국의 압력에 대한 국익 차원의 해법을 강구하려는 자세는 물론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중재에 대한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작권자나 선진국의 요구에는 신속하게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하려는, 다시 말하자면 저작권자나 선진국의 요구에는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맞춰

나가는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지금까지 12회에 걸친 저작권법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해 당사자 간의 중재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개정은 1957년, 1987년, 2007년의 경우 정도로 볼 수 있다(곽동철 2012, 62-71).

우리나라가 1957년 1월 28일 처음으로 저작권법을 제정하고, 1986년 12월 세계저작권협약 등 국제조약 가입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전부 개정되는 시기까지는 도서관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 이후 저작권법은 2003년 7월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보호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범위 명확화 등을 위해 개정되었고, 2004년 10월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도록 개정되었으며, 2006년 12월 공중송신과 디지털음성송신 개념 도입, 저작권위원회로의 명칭 변경과 역할 강화,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와 삭제·중단 명령 도입 등을 위해 전부 개정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2009년 4월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합하고 온라인불법복제방지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그리고 2011년 6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2011년 2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저작권법의 세부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이어서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는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과 이에 인접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 출판권으로 나누고 있다. 저작권은 다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하고

있다(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으로 국한하여 저작권 관련 법규의 제·개정에 따라 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대응자세 및 방안을 정리하고자 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시에 그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와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저작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지위로부터 생기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를 말하는 3가지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달리 양도하거나 상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저작재산권이란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를 말하는 7가지 권리로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의 권리를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31조의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1986년 개정 당시에는 제28조였으며, 2006년 개정 시부터 제31조에 정하고 있음)를 포함하여 10여개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2000년과 2003년의 저작권법 개정은 도서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으며, 동시에 반발도 불러일으켰다. 또한 2009년의 개정과 최근의 수업목적 보상금, 공연권 관

련 사항 역시 도서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대학 전체로부터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2000년과 2003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의 도서관 관련 내용과 그 이후의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도서관계 의견 개진 내용은 정경희의 논문(정경희 2012, 12-15)과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의 관련 자료(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c 2007)를 참조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2000년 저작권법 개정은 도서관이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를 위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도 소장 자료를 디지털화 하고 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하여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개정 법률에 대한 시행령에서 소장 자료를 디지털화 할 수 있는 도서관의 범위를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립대학교 도서관 등 국립도서관으로 제한함으로써 사립대학 도서관의 반발을 가져 왔다. 이와 함께 저작권자들도 도서관 소장 자료가 대량으로 디지털 복제되어 도서관 간에 공유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2003년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소장 자료를 디지털로 복제할 수 있는 도서관의 범주를 모든 도서관으로 변경하는 대신 도서관내 전송에 대해서 동시열람자수를 소장 부수만큼으로 제한하고, 판매용 자료의 도서관간의 전송은 발행 후 5년이 경과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또한 도서관간 전송과 도서관내 출력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도서관에 부과하였다. 이러한 도서관보상금제도는 1년간 시범실시 기간이 지난 뒤인 2004년부터 시행되자마자 도서관계로부터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도서관보상금제도의 도입에 크게 반대 한 대학도서관계에서는 사전 교육과 홍보 부족, 제도의 명칭과 보상금 산정장치의 보급방법 등 제도의 도입 및 시행방법 관련사항,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외, 팩시밀리를 이용한 전송과 대학 캠퍼스내의 도서관간 전송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외 등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대학도서관계에서는 점점 강화되는 저작권문제에 대응하고자 2004년 7월 29일 국공립 대학도서관협의회와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및 학위논문원문공동협의회가 함께 협의하여 '대학도서관 디지털 복제·전송 공동대책 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2006년 6월 18일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가 추가 참여하는 '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로 변경되면서 해체되었다. 그리고 2007년 12월 12일 '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를 해체하면서 교육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가 창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가 대학도서관계를 대표하여 수행한 저작권법규에 대한 의견 개진과 개정 추진 대처 내용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대학도서관계가 타관종의 도서관이나 단체들과 달리 저작권 문제에 가장 이해관계가 민감하고 그로 인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수행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계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작권법·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조항의 제·개정을 대상으로 대학도서관계의 대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저작권 법규 개정에 대한 대학도서관계의 대처 내용

지금까지 대학도서관계에서 크게 관심을 갖고 대처해 오고 있는 것은 2000년과 2003년 및 최근의 저작권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른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 전송 이용 보상금 기준(이하부터는 '도서관보상금제도'로 기술한다), 온라인 디지털 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하부터는 '온라인디지털납본법'으로 기술한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이하부터는 '수업목적보상금제도'로 기술한다),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하부터는 '영상물사용료징수규정'으로 기술한다) 등이다. 후술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이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갖고 대처해오고 있는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의 발간물과 내부자료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고자 한다(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c 2007;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b 2010).

3.1 도서관보상금제도를 포함한 저작권 관련 법규 개정 추진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서관보상금제도는 디지털도서관 구축과 원문의 안방 서비스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저작물의 전송 및 복제와 관련된 권리 처리를 보다 손쉽게 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디지털도서관의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저작권자의 침해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히 시행하게 됨으로써 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인 지식정보

의 공적 접근기회를 상당 부분 축소시키고,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실행의지와 그 실효성에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대학도서관계에서는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합법적 방법을 모색하면서 공동 대응하고자 '대학도서관 디지털복제·전송 공동대책위원회(이하부터 '공동대책위원회'로 기술함)'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이 제도가 국가적 차원에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착·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선결 사항을 성명서로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대학도서관 디지털복제·전송 공동대책위원회 2004).

첫째, 관계당국(보상금제도 주관 기관)은 도서관보상금제도 시행에 따른 이해 당사자들이 본 제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해야 한다.

둘째, 현재의 '도서관보상금제도'의 명칭은 '디지털 원문 이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

셋째, 도서관보상금제도 시행에 따른 제반 비용은 국고 및 대학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관계당국은 중앙정산방식의 표준화된 보상금 과금 및 배분시스템을 개발하여 각 도서관에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대학 내에서 생산된 비 판매용 학술논문 및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는 학위논문 등에 대한 디지털 원문 전송은 도서관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여섯째,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 3항에 의거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유일한 '저작재산권자단체'로 볼 수는 없다. 즉, 각 대학이 '저작재산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통해서만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자신들에게는 '감독권한'이 있고 도서관에는 '의무'가 있는 것과 같은 편향된 약정 체결의 강요는 바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일곱째, 팩시밀리(FAX)를 이용한 자료 전송은 도서관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여덟째, 저작권법은 우리나라 정보기술 환경이나 대학도서관 현실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즉, 저작권법 제28조 2항을 개정, 열람의 범위를 '도서관 등의 안'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대학 캠퍼스 내'로 확장하여 궁극적으로 '안방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아홉째, 관계당국에서는 일방적인 제도 시행보다는 주관기관, 도서관 및 출판관련 단체,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과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협력적 환경이 조성되고,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 질 때 까지는 제도 시행을 유보하여야 한다.

그 이후에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도서관 보상금 문제 해결과 각 협의회 회원 도서관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장·단기 행동 지침 및 유관기관과의 공동협력, 관련 연구, 법적인 자문,

정치적인 해결 등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여 대처하였다. 그동안 이 위원회가 저작권법 개정을 위해 추진한 대학도서관 중심의 활동을 일정별로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이하부터는 '복전협'이라고 기술하며, 현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로 개명되었음)가 저작권법 시행 강행을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대학도서관계와의 마찰 내용을 한국대학교서관연합회의 내부 자료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복전협은 도서관보상금 제도와 관련하여 대학도서관계와 마찰을 겪다가 2005년 11월 25일 학위논문공동이용협의회를 대상으로 저작권조정심의위원회의 저작권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다. 그 결과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해 왔던 신탁 저작물의 전송 및 출력서비스가 중단된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복전협이 원고 적격권이 없다고 기각하였다. 이와 함께 복전협은 2006년 1월 19일 거의 동일한 사안으로 학위논문공

동이용협의회 회장교를 맡고 있었던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장)를 피고소기관으로 관악경찰서에 고소하였다. 그 결과는 이 협의회가 2005년 12월 27일 저작권조정심의위원회의 분쟁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영리목적의 협의체라 볼 수 없고, 저작권법 제28조 도서관등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2006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처분결과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나타났다.

복전협은 이러한 처분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기관을 달리하여 2006년 8월 24일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 신탁된 임원선(2002. 2. 22), 이기수(2001. 7. 1)의 학위논문을 저작자의 승낙 없이 출력 및 전송서비스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학위논문공동이용협의회를 운영 중인 서울대학교(총장)를 지정하여 관악경찰서에 고소하였다. 2006년 12월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저작재산권에 대한 신탁을 신청 받은 수탁자인 복전협이 신탁자들로부터 수탁을 받은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공시할 의무가

<표 1> 대학도서관계의 저작권법 개정 추진 활동

추진일자	추진내용
2004. 7.29	저작권법 재개정 추진 주체로서 '저작권법공동대책위원회' 발족
2004. 8. 4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및 회원관 행동지침서 발표
2004.12.13	교육부와의 간담회, KERIS 주관 저작권법 개정 자문회의 참석
2004.12.14	교육부 및 문광부에 저작권법 개정(안) 제출 및 협조 요청
2005. 3. 3	청와대 및 문광부에 저작권법 개정 탄원서 제출
2005. 3. 8	열린우리당 주관 저작권법 개정(안) 공청회 참석
2005. 3.16	공동대책위원회, 국회의원보좌관, 문광부, 저작권심의회 합동 간담회 참석(국회)
2005.11. 3	이미경 의원, 이광철 의원 방문하여 저작권법 재개정 요구
2006. 1.20	천영세 의원, '저작물 공정이용과 DL 활성화' 토론회 참석
2006. 6.18	'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저작권법공동대책위' 해체
2007.12.12	'한국대학교서관연합회'를 설립하고 '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 해체

〈표 2〉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의 대학도서관계와의 마찰 내용

일자	안건제목	대상	조정신청 및 고소 등	조치 및 처분 사항	비고
2005.11.25	저작권조정심의위원회에 저작권 분쟁 조정 신청	학위논문공동이용협의회	- 신탁된 학위논문의 서비스 중단 요청 - 권리처리 없는 학위논문 원문 DB의 출력 및 전송 등의 서비스 중지, 회원교 도서관의 저작권법 제28조 및 동조시행령 준수 요청, 보상금산정을 위한 장치의 설치	-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제공해왔던 신탁 저작물의 전송 및 출력서비스가 중단한 사실 확인 -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원고 자격권이 없다고 기각	2005.12.27
2006.1.19	학위논문공동이용협의회를 관약경찰서에 고소	학위논문공동이용협의회	- 학위논문공동이용협의회는 전국대학도서관이 모여 만든 협의회로서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한 복제 가능시설이 아님 - 2005.12.27,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신탁된 13건의 어문 저작물의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서비스함	- 학위논문공동이용협의회는 영리목적의 협의체라 볼 수 없고, 저작권법 제28조 도서관등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음. - 2005.12.27,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2006.7.27 협의 없음(증거 불충분)
2006.8.24	서울대학교를 관약경찰서에 고소	서울대학교 총장	-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 신탁된 임원선(2002.2.22), 이기수(2001.7.1)의 학위논문을 저작자의 승낙 없이 출력 및 전송 서비스하고 있음	- 저작재산권에 대한 신탁을 신청 받은 수탁자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신탁자들로부터 수탁을 받은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공시할 의무가 우선이고,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신탁 신청자로부터 수탁을 받은 시점과 신탁자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해야 한다고 판단되기에 달리 위 피의자에게 저작재산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키 어려워 불기소(협의없음) 의견임	2006.12.14 협의 없음(증거 불충분)
2006.12.14	상기 고소건에 대해 항고	"	"	상기 건의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기각 처분됨	2007.4. 기각처분

우선이고,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신탁 신청자로부터 수탁을 받은 시점과 신탁자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해야 한다고 판단되기에 달리 위 피의자에게 저작재산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협의없음) 처분하였다. 이러한 처분 결과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07년 4월 기각 처분되었다.

그 후 저작권법상 보상금제도가 도서관계와

저작권관리단체와의 견해 차이로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있어 이해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와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주관으로 3차례의 협상을 거쳐 2008년 12월 17일 양 단체 대표자의 명의로 “대학도서관간 상호대차에 있어서 자료 복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 협정의 내용을 향후 저작권법시행령을 개정할

때에 반영하기로 합의하였다(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b 2010). 이에 따라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는 시민단체인 '정보공유연대'와 협력하여 저작권법시행령 제12조 1호의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정을 청원하였고, 이와 함께 국회에서 최문순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대표발의가 있었다. 하지만,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하겠다는 회신에도 불구하고 복전협회의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는 2009년 7월 22일 이러한 합의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사유를 들어 저작권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이 문제는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양측 간 이해관계를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3.2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에 대한 의견 개진

전국의 대학 관계자들이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1년 4월 28일 이 제도의 시행을 고시하고,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서 각 대학에 약정 체결 요청과 법적 절차 진행을 예고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부터는 '대교협'으로 기술한다)에서는 이러한 대학의 의견을 수용하여 2011년 7월 15일 "대학교육에서의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제33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어서 2011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교협은 이 제도의 시행을 유보하면서 이용자 측면에서의 보상금

지급 기준에 대한 연구 수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양측은 2012년 12월 29일 서울대학교에 위탁한 "대학수업 저작물 사용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연구"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고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정상조, 안효질, 이영록 2011).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4월 27일 상호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정된 보상금 지급 기준을 고시하였다. 이 고시에 따라 복전협회는 또다시 대학에 약정체결 공문을 발송하였고, 대교협은 대학에 약정체결을 지양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이 제도에 대한 논란이 더욱 가중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논란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의 대상이 모호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도 있다. 현재 관련 법규에서는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당 교육기관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서 기관장의 관리감독 하의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수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포괄적이고 막연하게 정의하고 있다. 즉, 보상금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행위를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의 대상이 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하겠다. 여기서 현행 저작권법의 공정한 이용 관련 조항을 적용하여 대학교육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수업목적보상금'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처럼 7가지 사례들이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옳다면, 단순히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대학교육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표 3〉 대학교육 사례별 ‘수업목적보상금’의 대상 여부 분석

구분	내용
사례1	A교수가 본인 강의에서 제3자의 저작물을 교재로 사용할 경우, 보상금 대상이 되는가? (교재를 교수 학생 모두가 구입했으므로 해당 없음) → 만약 그 교재 안에 시인 B의 시 한편이 게재되었다면 보상금 대상이 되는가? (교재의 저작자가 시인 B로부터 이용 동의를 받았으므로 해당 없음)
사례2	A교수가 강의에서 도서관이 소장한 제3자의 논문(또는 이론)을 인용하여 강의하였다면 보상금대상이 되는가? → 제28조, 제31조1항의 적용으로 해당 없음
사례3	A교수가 학생에게 특정 자료(어문자료, 영상자료, 음악자료, 미술자료 등)를 도서관의 ‘과제자료실’에서 열람하고 필요한 부분을 복제하여 다음 수업에 참석하게 하였다면 보상금 대상이 되는가? → 도서관이 보유한 자료의 열람이고, 제25조3항, 제31조1항, 제31조2항의 적용으로 해당 없음
사례4	A교수가 학생들과 함께 수업목적으로 도서관이 소장한 DVD(영화 또는 동영상강의)를 도서관에서 함께 열람하고 토론하였다면 보상금 대상이 되는가? (도서관이 보유한 자료의 열람임으로 해당 없음) → 도서관이 소장한 음반을 재생하여 학생들에게 들려주었을 경우 보상금 대상이 되는가? (도서관이 보유한 자료의 열람임으로 해당 없음)
사례5	A교수가 제3자의 비판매용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를 구하고 교재로 사용하였다면 보상금 대상이 되는가? → 이용허락을 받았으므로 해당 없음
사례6	A교수가 강의교재를 영상파일(ppt 파일 등)로 제작하는데 있어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하였다면 보상금 대상이 되는가? (제28조, 제31조1항, 제31조2항의 적용으로 해당 없음) → A교수가 위 강의교재를 학교의 서버에 업로드하여 인터넷에서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면 보상금 대상이 되는가? (강의교재의 저작권자는 A교수임으로 해당 없음)
사례7	연극과 A교수가 실기시험을 위해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제3자의 희곡(또는 시나리오)의 일부를 복제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그 내용을 연기하도록 하였다면 보상금 대상이 되는가? → 제2조, 제32조의 적용으로 해당 없음

행위가 그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곽동철 2012, 62-71).

이처럼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2012년 7월 20일 국회 서상기 의원 주최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의 주요 쟁점을 요약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복전협에서는 저작권자의 보호를 위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소송도 불사하며 수업목적보상금 제도를 고시대로 시행하겠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교육부와 대교협에서는 2012년 12월 29일 제출받은 관련 연구결과의 불인정이나 교육에서 공정이용에 대한 규정의 불명확, 유관 보상

금의 분배실적 미비, 보상금 징수비용의 배분 금액 초과 가능성, 반값등록금 시행을 앞둔 대학의 재정 압박 등을 제시하며 이용자 입장에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반박하였다. 즉, 양측은 이러한 토론과정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실패하면서, 복전협에서는 수업목적보상금 약정 미체결 대학을 대상으로 소송에 이르렀고, 대교협에서는 저작권 관련법규의 개정과 소송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여 나가고 있다. 이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면 중앙정부 부처인 교육부와 문화부가 사전에 국익차원에서 충분히 협의한 후 결정하여 시행해야 될 일이라고 하겠다.

3.3 온라인디지털납본법(안)과 도서관법의 개정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각 관중별 도서관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책무를 갖고 있는 도서관이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학도서관계가 저작권법 문제에 대처하는 사이에 사전 협의도 없이 국회 이광재 의원 대표발의로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에서는 대학도서관계의 반발을 수렴하여 2007년 11월 5일 ‘온라인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2013). 그 주요 골자는 <표 4>에서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이 대학도서관으로부터 디지털자료를 납본받아 보존기능을 넘어 유통 및 재가공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국립중앙도서관은 2007년 12월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의 성명서를 반박하는 검토 의견서를 보내 왔고, 이에 대해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가 2008년 2월 15일 두 번째로 재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법률(안)은 제17대 국회의 임기 마감으로 인해 자동 폐기되었다. 하지만 국립중앙도서관이 대학도서관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17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 법률안을 18대 국회가 구성되자 부분 수정하여 이 법률의 제정을 재시도하였다. 이에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는 2008년 8월 강력한 반대 사유를 명시하고 이 법률의 제정을 포기할 것에 대해 세 번째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에서 발간한 『2012 대학도서관연감』을 참조할 수 있다(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2012).

국립중앙도서관이 추진한 상기 법률의 제정이 대학도서관계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자 별법 제정을 포기하는 대신에 ‘도서관법’ 제20조의 기존 납본제도를 보완하기로 하고, 국회 정병국 의원이 ‘도서관법 개정안’(의안번호 1773)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전자와 후자의 주요 차이점을 간략히 비교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이처럼 ‘온라인자료 납본법(안)’이 납본된 자료를 국립디지털도서관(NDL)을 통해 유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 ‘도서관법 개정안’은 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납본의 강제

<표 4> ‘온라인자료 납본법(안)’과 ‘도서관법 개정안’의 비교

구분	‘온라인자료 납본법(안)’	‘도서관법 개정안’
입법형식	특별법 제정	‘도서관법’ 일부개정
납본목적	유통(기존 사이트와 경쟁)	보존
납본대상	전체 온라인자료 대상	보존가치 있는 것을 선별
납본 강제성 여부	납본을 의무화 함	납본을 권고사항으로 함
자동수집	자동수집기로 강제수집 가능	자동수집기로 강제수집 불가능
수집자료 3차 양도	가능	불가능
수집자료의 변형	편집저작 및 제2차 저작 가능	편집저작 및 제2차 저작 불가능
납본 보상 대상	판매용(업로드비용 보상)	판매용(비용추계서 없음)
벌칙	있음	없음

성과 관련하여 전자는 NDL이 자의적으로 자동수집기를 이용하여 강제 수집하는 방법과 별책을 두어 자진납본을 강요하지만, 후자는 생산자의 의지에 따라 납본하는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자료의 저작권 제한에 있어서도 전자는 NDL이 납본자료를 자의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NDL이 납본자료의 편집저작권 및 제2차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이 모든 사항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후자의 '도서관법 개정안'은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는 '도서관법 제20조 2항(온라인 자료의 수집)'에 의한 보상이 온라인자료의 개발비용과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한 실효성 있는 보상이 되도록 시행령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본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도서관법(법률 제9528호)은 2009년 3월 25일 공포되고, 동년 9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09년 9월 26일 개정된 '도서관법'이 시행에 들어가자 '도서관법 제20조 2항(온라인 자료의 수집)'에 의거하여 수집한 온라인자료를 독자적 사이트를 통해 유통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는 공문(디지털기획과-489)을 2010년 5월 17일 납본기관에 발송하였다. 이는 '도서관법 제20조 2항'의 신설 과정과 온라인자료 납본 반대의 의미를 반복하는 것과 같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된 온라인 자료를 유통하지 않고 보존만 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는 결국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된 온라인자료를 유통하겠다고 하는 것으로서 이미 폐기된 '온라인자료 납본 및 이

용법'을 방법만 달리하여 시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여겨졌다. 이에 따라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는 2010년 6월 17일 <표 4>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이러한 조치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표하였다.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국립중앙도서관도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각 관종별 도서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나갈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3.4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에 대한 의견 개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신청한 '신탁관리업허가' 변경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면서 '영상저작물 이용료 징수 규정'의 개정 앞서 2011년 1월 28일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에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다. 그 변경 이유는, 첫째, 영상저작물의 공연(시청제공) 형태는 과거 비디오, DVD의 매체에 의한 공연(시청제공)에서 점차 VOD, 내려받기(Download) 등과 같은 디지털화된 여러 형태로 급속도로 생성 발전 되고 있음에 따라 공연(시청제공)권 신탁관리에 대한 재 정의와 공연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원활한 영상저작물의 집중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복제권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상기 규정의 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청원하며 예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매체(비디오, DVD, VCD)에 의한 공연권만으로는 원활한 영상저작물에 대한 신탁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 즉, 관련 산업이 사양화됨에 따라 매체를 이용하지

않는 공연이 점차 증가 되고 있으며, 산업 역시 매체를 이용하지 않는 온라인 등을 통한 공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령집에 의한 영화상영관에서의 공연을 제외한 공연(시청제공) 장소에서의 영상저작물의 공연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영상저작물의 이용형태가 기존 단순 공연 행위에서 기업의 홍보, 연주회, 교육용 동영상, 개인 미디어(블로그, UCC) 등의 발전으로 영상저작물의 일부 편집 및 일부 화면의 캡처의 활용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용허락 및 문의가 쇄도하고 있음에도 권리자를 일일이 찾아 허락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허락해줄 수 있는 신탁관리단체가 전무한 상황임에 따라서 허락을 받아 사용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이에 사용을 못 하거나 무단 사용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체계적인 신탁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넷째, 영상저작물의 집중관리를 통한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극장 공연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부가시장의 복제권리부터 관리가 이루어져야 영화산업 전반적인 유통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아직까지 복제권리에 대한 집중관리단체가 전무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체계적인 저작권리 확인과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한국영상산업협회가 개정하고자 하는 '영상저작물 이용료 징수 규정'의 내용을 요약하면, 현재까지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저작권법시행령 제11조 8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에서만 영상저작물 이용료를 징수하던 것을 저작권법시행령 제11조 8호의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모든 장소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공중에게 공연할 때에도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영상저작물 이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신설한 제7조(공공기관 등의 공연장에서의 공연사용료)의 내용을 보면,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영상저작물을 도서관 내의 시설에서 교육과 학습 및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더라도 '영상저작물 이용료를 별도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영상저작물 이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해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는 2011년 2월 11일 대학도서관계의 의견을 수렴·정리하여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다(이호신 2012, 16-22;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2013). 그 반대 사유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저작물의 본질에 반하고, 저작물의 교육 및 수업 목적 사용에 대하여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는 저작권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둘째, 영상저작물의 사용료 징수가 오히려 저작권자의 실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대학도서관에는 막대한 인력 및 예산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이용자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셋째, 영상저작물 이용료 징수의 방법이 포괄이용방식이거나 개별이용방식이거나 모두 난해하고, 실익에 비해 사회적 갈등에 따른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 이후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에서는 2011년 10월 9일 개최한 "한국영상산업협회 사용료 징수 규정 관련 의견조회 및 청취(공연3)"에 참석하여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고, 2011년 10월 22일 대학

도서관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영상산업협회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2013). 이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첫째, 다양한 영상물들이 디지털화된 형태로 보급되는 현실에 맞추어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도모하여 영상산업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하는 한국영상산업협회의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 둘째, 저작권 보호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정보이용 권리도 적절하게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지식을 재창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과 정보의 공정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저작권 보호와 사용료 징수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 속에 도서관에서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에 대해 각 조항별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최근 들어 2013년 1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한국영상산업협회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공지하였고, 2013년 4월 5일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에서는 산하 법제연구사업단의 이름으로 '한국영상산업협회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대한 의견서'(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2013)를 또다시 제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저작권 보호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정보이용 권리도 적절하게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지식을 재창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따라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기능과 정보의 공정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사용료 징수에도 반영되어져

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첫째, 도서관 관내대출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반대한다. 제8조 1항에서 관내대출이 공연에 해당한다는 문화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관내대출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안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도서관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훼손하는 내용이라 판단되며 사용료 징수에 반대한다.

둘째, 도서관 집단상영(단체관람)에 대한 사용료 인상의 근거가 부족하며, 인상폭이 비합리적이다. 기존 안을 시행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가격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영상산업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용료 책정기준이 불합리하다.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용료 책정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에서는 정확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근거와 비용산정기준을 마련한 후 사용료 징수가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사)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도서관단체, 감독기관 등이 공동으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4. 대학도서관계의 저작권 범규 수용과 대응 전략

우리 대학도서관계도 정부의 저작권정책에 대해 바라는 것은 저작권법에 명시된 바와 같

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을 향상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정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권리 보호 측면과 이용 활성화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학계나 도서관에서는 외국저작물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내·외 저작권 관련 법규의 제·개정이나 조약 체결 등으로 외국저작물의 사용이 규제됨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변화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대학도서관이나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구성원들은 법이 허용하는 공정사용의 한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연구나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저작물의 유익한 사용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그 한계가 넘는 사용에 대한 적정보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현실에 맞는 저작물 사용료 지불제도가 확립되어 국내·외적으로 저작물의 정당한 사용이 보장되어야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새로워질 수 있다(이순자 1987).

지금까지 도서관 관련 저작권 법규의 제·개정 과정에서는 권리 보호 측면에서도 할 말이 있겠지만, 이용 활성화 측면인 도서관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반영되었다고 하겠다. 이는 저작권 관련 산하 기관 및 단체, 심지어 도서관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는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가 모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어서 적극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는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연유로 교육부 소속의 대학도서관계가 그나마 저작권법규 관련 사항에 대해 도서관의 목소리를 강하게 개진하여 왔다

고 할 수 있다. 물론 각 관중별 도서관 가운데 대학도서관이 전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저작권 관련법규의 제·개정 내용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를 중심으로 대학도서관계가 저작권법규의 제·개정 과정에서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을 기반으로 전체 이용자 측면에 초점을 맞춰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응전략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현재 대학과 대학도서관계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사안별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국가적 차원의 저작권 관련 제반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수반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저작물 이용보상금 협의체(가칭)'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즉, 교육부(대학 및 도서관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단체 등이 협의 주체로 참여하여 관련부처 간의 저작물 이용보상금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상금 관리주체, 저작자 권리, 이용절차, 이용형태, 보상금 지급 기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또한 저작물 이용보상금 협의체의 구성 및 관계 법령의 정비 추진 등에 대한 합의도 출이 단기간 내에 어려울 때에는 총리실이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저작물 이용보상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현재 우리나라 저작물 이용보상금 처리 절차에서는 등록단계에서 협의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용보상금 지급단계에 이르도록 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물 이용보상금 청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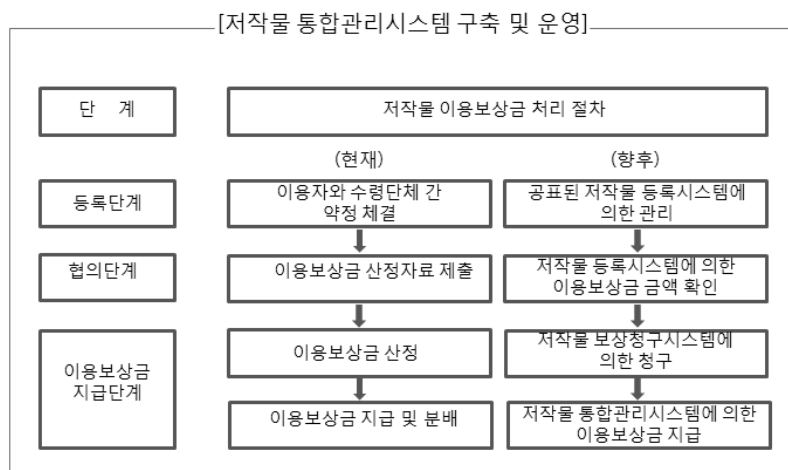
을, 교육부에 저작물 이용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그림 1>에서와 같이 저작물 이용보상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연동시켜야 한다. 여기서 저작물 이용보상금 청구시스템은 저작권자가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면 보상금을 받았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시스템이고, 저작물 이용등록시스템은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 사전에 저작물을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저작물 이용보상금 통합관리시스템은 전술한 두 시스템을 연계하여 통합·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하겠다.

셋째, 저작물 이용보상금 수령단체의 구조 및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 저작물 이용보상금은 복사, 전송, 복제, 배포, 방송 등 모든 저작권자의 권리를 신탁하고 있는 단체에 수령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전협을 비롯한 저작권 관련단체들이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한 신탁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저작물의 유형별 구조 조정 및 기능 개편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복전협

의 직접적인 저작물 이용보상금 징수업무의 계속 또는 중단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이 경우에 저작권자에게 배분되는 실제 금액에 비해 저작물 이용보상금을 징수하여 분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거나 징수한 이용보상금의 분배 실적이 저조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넷째, 저작물의 재능기부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테면,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저작권자가 본인의 저작물에 대해 교육기관이 수업목적 등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 재능기부를 유도해야 한다. 즉, 저작권자가 저작물 보상청구시스템에서 재능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체계화시켜야 한다. 이는 이용보상금 청구 의사가 없는 저작물에 대해 보상금을 징수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에서 저작물의 생산자와 이용자를 연계시키는 통합관리시스템의 추진을 전제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대립되고



<그림 1> 저작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절차

있는 전술한 저작권 관련 문제점, 즉, 도서관보상금제도, 수업목적보상금제도, 온라인디지털 납본법, 영상저작물 이용료 징수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사안별로 해당 부처나 기관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보상금제도'와 관련하여 대학도서관계가 고등교육을 위해 기본교육시설로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와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서는 양측 간에 체결한 '대학도서관간 상호대차에 있어서 자료복제에 관한 협정서'에 명시된 정신을 살리면서 저작권 관련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나가야 한다.

둘째, '수업목적보상금제도'에서는 단순히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대학교육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위가 그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전형은 저작권자로부터 관리신탁 받은 저작물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의사 표시가 없는 제3항의 저작물에 대하여는 현행 보상금제도와는 차별화된 합리적인 저작권 처리 방법을 고안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작권관리단체는 이용자가 수탁 저작물 여부와 저작권자의 요구 내용을 정확하고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온라인디지털납본법'과 관련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은 저작권법규와 관련된 도서관정책을 추진할 경우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대학도서관을 비롯한 각 관중별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를 기초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타 관중의 도서관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을 강구하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영상저작물 이용료 징수'와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보호 문제를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정보이용 권리도 적절하게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지식을 재창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즉,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기능과 정보의 공정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사용료 징수에도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5. 결 론

지금까지 저작권 관련법규의 시행과 관련하여 전술한 각각의 상황들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규와 도서관' 또는 '저작권법규와 대학교육'이라는 범주에서 서로 시각을 달리하면서 극한 상황으로 전개되어 왔고, 이에 따른 논의 역시 계속 반복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사항은 대학 전체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대학도서관이 관계되어 있는 사안들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저작물의 생산자나 이용자 측을 상대적으로 대변하는 정부 부처나 기관 및 단체 모두가 각각 국가발전을 위해 나름의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기관이나 단체가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정부 관련부처간의 충분한 사전 조율이나 협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저작권법규 관련 양측은 각각 자신의 주장만을 반복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익이 되는 방향을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저작권 관련 문제는 저작권 주무부처 이면서 저작권자나 관련단체를 대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과용도서보상금을 포함하여 또 다른 유형의 보상금을 납부해야 할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 대학본부 및 관련 단체를 대변해야 할 교육부가 부처이기주의를 벗어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제도적인 정착을 이루어나갈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우선적으로 이에 대한 대학과 도서관의 어려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전담 부서를 신속히 확충하여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교육부는 저작권법규 관련 문제에 대해 너무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즉, 대학도서관계를 대표하여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가 적극적으로 저작권 관련 문제 해결에 나섰던 이유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저작권 관련 제도가 권리자의 보호와 이용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길 바라고, 기본적으로 대학이나 대학구성원들이 모두 저작권을 준수하는데 반대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저작권제도와 같이 저작물의 생산자와 이용자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일수록 양측 소속의 정부중앙부처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즉, 문화체육관광부가 절차상 요식 행위를 거쳤다는 주장 속에 시행을 강행하기보다는 이해 관계자와 더욱 충실히 함께 논의하고, 중재하여 보상금의 산정방식, 저작권자 배분방법, 공정이용의 범위 설정

등을 명확히 한 후 시행해야 할 것이다(이형규 2012, 72-80).

둘째,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사항들에 대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산하 단체와 기관들이 국익과 저작권자 및 이용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원만한 해결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간다고 보고, 소송 제기를 통한 보상금의 징수보다는 저작권자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에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에서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의 성급한 적용은 오히려 대학구성원들의 저작권 보호 의식까지도 약화시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여지가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면 중앙정부 부처인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전에 국익차원에서 충분히 협의한 후 결정하여 시행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부처 간의 극심한 정책 대립을 지양하기 위해 대학을 관장 중인 교육부가 저작권 문제를 다룰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급선무로 여겨진다.

넷째, 그러한 의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양측 간의 의견이 서로 다른 저작권 관련법규의 시행을 유예하고, 지금부터라도 대부분의 이용자 측을 관장하고 있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이와 관련된 협의체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저작권자와 이용자 관련 유관단체들도 참여시켜, 마치 교육계에서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면서 단점을 개선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하듯이, 충분한 조사 분석과 논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광동철. 2012.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대학교육』, 178: 62-71.
- [2] 김기태. 2012. 수업목적보상금제도에 대한 대학도서관의 입장. 『도서관문화』, 53(9): 23-28.
- [3] 대학도서관 디지털 복제·전송 공동대책위원회. “대학도서관 디지털 복제·전송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2004. 8. 3.
- [4]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2011 저작권 백서』. 서울: 동 부 및 위원회.
- [5] “수업목적보상금제도 추진사항.” 2013.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Newsletter』, 5(2013. 7). [online]. <<http://www.korra.kr/newsletter/201307/sub2.html>>.
- [6] 이순자. 1987. 『저작권 보호와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공중사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7] 이형규. 2012.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대학교육』, 178: 72-80.
- [8] 이호신. 2012. 공공도서관과 공연권. 『도서관문화』, 53(9): 16-22.
- [9] “저작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38828&cid=128&categoryId=128>>.
- [10] 정경희. 2012. 정보공유를 위한 도서관 관련 저작권 제한 규정의 재검토 방향과 도서관의 노력. 『도서관문화』, 53(9): 12-15.
- [11] 정상조, 안효질, 이영록. 2011. 『대학수업 저작물 사용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12]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a. 2012. 『2012 대학도서관연감』. 서울: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 [13]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b. 2010. 『2010 대학도서관백서』. 서울: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 [14]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c. 2007. 『저작권 개정 방향(안)/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협의자료』. 서울: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 [15]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홈페이지. 2013. [online]. <<http://www.kucla.or.kr>>.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wack, Dong-Chul. 2012. “Sueob mokjeok jeojakmul iyong bosanggeum jedoneun nuguleul wihan geos-inga?” *Higher Education*, 178: 62-71.
- [2] Kim, Ki-Tae. 2012. “Sueob mokjeok bosanggeum jedo-e daehan daehak doseogwan-ui ibjang.” *KLA Journal*, 53(9): 23-28.

- [3] The Joint Committee on Digital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of Academic Libraries. "The Statement: the Joint Committee on Digital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of Academic Libraries." 2004. 8. 3.
- [4]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Korea Copyright Commission. 2012. *2011 Copyright White Paper*. Seoul: MCST · KCC.
- [5] "Sueob mokjeok bosanggeum jedo chugin sahang." 2013. *Korea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Rights Association Newsletter*, 5(2013. 7). [online].
〈<http://www.korra.kr/newsletter/201307/sub2.html>〉.
- [6] Lee, Soon-Ja. 1987. *Copyright Protection and Fair Use of the Copyrighted Works in the Library*. Ph.D. diss., University of Yonsei.
- [7] Lee, Hyeong-Kyu. 2012. "Daehakui sueob mokjeok jeojakmul iyong bosanggeum jedo, mueos-i munje inga." *Higher Education*, 178: 72-80.
- [8] Lee, Ho-Sin. 2012. "Gonggong doseogwangwa gongyeongwon." *KLA Journal*, 53(9): 16-22.
- [9] "Copyrigh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online].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38828&cid=128&categoryId=128>〉.
- [10] Joung, Kyoung-Hee. 2012. "Jeongbo gongyuleul wihan doseogwan gwanryeon jeojakgwon jehan gyujeong-ui jaegomto banghyanggwaw doseogwanui noRyeok." *KLA Journal*, 53(9): 12-15.
- [11] Jeong, Sang-Jo, Ahn, Hyo-Jil, & Lee, Yeong-Rok. 2011. *Daehak Sueob Jeojakmul Sayong-e Daehan Bosang-geum-e gwanhan Yeongu*. Seoul: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 [12] The Korea University & College Library Association. 2012. *2012 Academic Library Yearbook*. Seoul: The Korea University & College Library Association.
- [13] The Korea University & College Library Association. 2010. *2010 Academic Library White Paper*. Seoul: The Korea University & College Library Association.
- [14] The Korea University & College Library Association. 2007. *The Documents of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for Revision Directions of Copyright*. Seoul: The Korea University & College Library Association.
- [15] The Korea University & college Library Association Homepage. 2013. [online].
〈<http://www.kucla.or.kr>〉.